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11. 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0월 16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0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122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6. 11. 2)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김 종 선

가. 제안이유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확산, 주민자치위원의 심의기능 강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준칙" 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준칙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

-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 (안 제1조 내지 제6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

-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안 제7조제8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4항)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폐지(안 제17조제1항, 제2항, 제5항)
-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는 규정 마련(안 제17조제5항)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의무 규정 마련 (안 제18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2005년 12월 6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동사무소는 물론 동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안 제1조 내지 안 제6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20조에서 "동사무소"로 한정되었던 공간을 "동" 전체의 광범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구를 정비하고, 관할 구역내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방안 강구를 규정한 안 제7조제8항의 신설규정은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할 구역내의 학교,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4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 등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존재와 역할 제고를 위하여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

○ 안 제17조제1항에서 현행규정에는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되었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당연직 고문에 관한 관련규정이 없어 지방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당연직 고문에 관한 규정을 주민의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을 보다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선거구내 동에서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요지 :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

가. 발의 일자 및 발의자 : 2006. 11. 2 강원돈 위원 외1

나. 수정이유 : 본 건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구의원으로써 주민의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을 보다 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구의원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선거구내 동에서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수정하고자 함.

다.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과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에 한하여 고문이 된다.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6. 10. 16
제 안 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구의원으로써 주민의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을 보다 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구의원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선거구내 동에서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안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과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에 한하여 고문이 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과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에 한하여 고문이 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과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하 "고문" 이라 한다)이 된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과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 이라 한다)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하 "고문" 이라 한다)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에 한하여 고문이 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0.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확산, 주민자치위원의 심의기능 강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준칙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

-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
  (안 제1조 내지 제6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 "동사무소" 로 규정된 조문을 "동" 으로 개정
-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안 제7조제8항)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4항)

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폐지(안 제17조제1항, 제2항, 제5항)
-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는 규정 마련(안 제17조제5항)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 · 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의무 규정 마련 (안 제18조제5항)

3. 근거법령

(1)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06. 7. 6 ~ 7.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2006. 8. 28)

다. 신 · 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단서규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동장"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동사무소의 동장"을 "동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중 "변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2항제2호중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제17조 제5항 내지 제9항을 제6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중 "위원"을 "위원이나 고문"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와 단체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를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로 하며, 동조제1항제5호중 "기타 직무"를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 로 하며, 동조제2항중 "위원"을 "위원 및 고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관할 동사무소에(이하 "동사무소"라 한다)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동에(이하 "동"이라 한다)·····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 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1. ····· ····· ·····동에····· ····· ····· 2. (현행과 같음)
제3조(원칙) 제2장에서 정한 주민자치센터와 제3장에서 정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5. (생략)	**제3조(원칙)**····· ····· ····· ····· 1~2. (현행과 같음) 3. 동별····· 4~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등)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설치 등)** ①…… …… …… **동의**……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① (생략)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조(기능)** ① (현행과같음) ②……**동의**……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 … **동에**…… …… …… ②…… …… ……**동별**…… …… …… ③…… ……**동의**…… …… ……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③ (생략)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세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⑦ (생략) **〈신설〉**	**제7조(운영)** ①……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동장**…… …… …… …… …… …… …… ⑤~⑦ (현행과 같음) **⑧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 등) ①~③ (생략)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5조(설치)**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동사무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이용 등)**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설치)** **동의**…… …… ……**동에**…… …… ……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과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이 된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동의…… …… …… …… 선정된 자 …… …… ……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복지시설, 통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1. …… …… ……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2. ……선정된 자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⑤~⑥ (생략)	⑥~⑦ (현행⑤~⑥와 같음)
⑦제5항 및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게시 등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⑧제6항…… …… ……
⑧~⑨ (생략)	⑨~⑩ (현행⑧~⑨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④(생략) 〈신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④(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와 단체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 2~4. (생략) 5. 기타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0조(해촉)① ……위원 및 고문…… …… …… …… …… …… 1. ……동 ……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4. (현행과 같음) 5.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 …… …… ②…… ……위원 및 고문 …… ……